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6. 17 선고 2019가단1075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20. 6. 10.

판결 선고2020. 6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,769,780원과 이에 대한 2020. 5. 8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채권자는 '원고'로, 채무자는 '피고'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원용일

별지